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용혜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197 발의연월일: 2024. 11. 4.

발 의 자 : 용혜인 · 한창민 · 염태영

조 국・이수진・황명선

민형배 · 김성환 · 복기왕

윤종오 • 윤호중 • 이광희

서왕진 의원(13인)

제안이유

현대 사회는 기후위기, 초저출산, 초고령화, 저임금 저성장, 고용 불안, 양극화 등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연대경제를 적극 수용하고 확산할필요가 있음.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UN)등 국제기구는 사회연대경제가 기후위기, 저성장, 소득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구조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있는 효과적인 경제수단이라는 점을 인정함.

국제기구는 또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국 정부가 재정 투입, 공공조달 인센티브 제공, 금융 서비스와 자금에 대한 접근성 확장 등 사회연대경제를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을 권고함. 실제 해외의 경우 프랑스, 스페인, 룩셈부르크, 벨기에, 그리스, 캐나다(퀘벡). 포르투갈, 멕시코 등의 국가들이 사회연대경제 관련 법률

을 만들어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신용협동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 사회연대경제 또는 협동조합 관련한 개별법들이 존재하고 있으나 각기 다른 목적과 다른 시기에 만들어져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못하며 일부는 상충하는 내용도 있어 이를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근거 법률이 필요함. 또한 사회연대경제는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크지만, 정의와 범위 등이 모호하고 통합적인 육성 ·지원 정책이 없는 점도 법률 제정 필요성의 배경임.

따라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법인, 중간지원조직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을 포괄하는 공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도화하는 한편, 정책의 수립·총괄·조정에 관해 필요한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연대경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이를통해 사회연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공동체 활성화와 국민경제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회연대경제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연대경제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여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건강한 공동체의 조성 및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사회연대경제"를 사회 호혜와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 공 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1호).
- 다. "사회적금융"을 사회연대경제조직과 사회연대경제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융자·보증 등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금융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4호).
- 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 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각 시·도지사는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사회연대경제위원회는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8조, 제9조, 제10조).
- 바.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연대경제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3조).
- 사.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관한 업무를 통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한국사회연대경제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17조).
- 아.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도별 지방자치단체에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8조).
- 자.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는 재정 및 금융자금 공급의 활성화, 금융체계의 구축 등 사회적 금융 제도를 정비하여야 함(안 제20조).

- 차.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 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21조).
- 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마련하여 하고, 공공기관은 재화나 용역 구매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비율 이상의 사회연대경제조직 제품을 구매하도록 함(안 제25조).
- 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 파. 사회연대경제조직은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관과 규약,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 사업결산 보고서 등을 적극 공개하고 경영공시를 하도록 함(안 제31조 및 제3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명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16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회연대경제의 정의·범주·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법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건강한 공동체 조성과 국민경제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사회연대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 1. 구성원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목적의 실현
 - 2. 구성원에 의한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 3.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운영
 - 4. 구성원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이익 또는 잉여금의 사용과 배분
- 5. 지역공동체 개발과 지역순환경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상호부조와 협력 강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회연대경제"란 사회 호혜와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 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 2. "사회연대경제조직"이란 사회연대경제 활동을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 연합회
 -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 에 따른 마을기업
 -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과 연합회 및 전 국연합회
 - 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영 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 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4에 따라 재정 지원 등을 받는 「민법」상 법인·조합
 - 아.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 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같은 법 제112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 자.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 동조합중앙회 및 같은 법 제113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 차.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산림조합, 품목별·업종별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및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 법인
- 카.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 타.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 조합중앙회
- 파. 「새마을금고법」 제2조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 앙회
- 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 거. 「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 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 하여 지정되는 예비사회적기업
- 너. 제5호에서 정한 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조직
- 더. 제19조에 따른 사회연대경제연합조직
- 러. 그 밖에 제2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단체

- 3. "사회적가치"란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추구하는 가치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말한다.
 - 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 신장
 - 나. 시민 또는 구성원의 권리 확장을 위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 여
 - 다.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사회 역량 강화
 - 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 등 사회통합 증진
 - 마. 지역사회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
 - 바. 취약계층 등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노동권 보장
 - 사. 자원 재활용과 환경 지속가능성 보전
 - 아. 그 밖에 사회 공익 증진과 사회 공공성 실현
- 4. "사회적금융"이란 사회연대경제조직과 사회연대경제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융자·보증 등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금융을 말한다.
- 5. "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 촉진,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역량 강화와 생태계 조성 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하여 법제, 재정, 세제 지원 등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 민간조직과의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자생력과 협동정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이해와 이용 제고에 필요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 제공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적정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사회연대경제조직의 책무) ①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제2조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고 사회적가치 실현과 확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 여야 한다.
 - ② 사회연대경제조직은 다른 사회연대경제조직과 협력과 연대를 통하여 사회연대경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한다.
 - ③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사회적가치를 포함하는 제품의 생산 및 품질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경영공시 등을 통하여 투명성을 제고하

여야 한다.

- ④ 사회연대경제조직은 노동·인권·환경·복지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사회적책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사회연대경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

- 제7조(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 연대경제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 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사회연대경제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 2. 사회연대경제의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 3.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원 육성방안
 - 4.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 방안
 - 5. 사회연대경제 지원체계 구축과 민·관 협력 강화방안
 - 6. 사회연대경제 분야별 · 업종별 모범 사례 발굴 및 확산방안

- 7. 사회연대경제 발전 사업의 통합방향과 주요 추진과제
- 8.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 9. 사회연대경제 발전기금 운용방안 및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 10. 공무원과 초등·중등·고등교육기관의 학생 및 시민에 대한 평 생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사회연대경제 발전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③ 기본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제13조에 따른 사회연대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부문별 시행계획"이라 한 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부문별 시행계

- 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사회연대경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사회연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에 관하여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사회연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부문별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의 점검·평가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⑤ 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9조(시·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한다)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사회연 대경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사회연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시·도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에 관하여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사회연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시·도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의 점 검·평가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에

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⑤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① 사회연대경제위원회는 제8조 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자문 단을 둘 수 있으며, 평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사회연대경제위원회는 부문별, 시·도별 실적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해당 조직에 혜택을 부여하거나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평가자문단 구성과 전문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 제2항에 따른 혜택과 포상 등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관한 계획에 우선한다.
- 제12조(사회연대경제 통계조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하여 기초조사와 여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 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사회와 관련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그 분석단위에 사회연대경제 분야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3장 사회연대경제위원회 및 추진체계

- 제13조(사회연대경제위원회) ①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연대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조정한다.
 - 1.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전략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 2.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기본계획과의 조화를 위한 시행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 4. 사회적금융의 제도정비 및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방안에 관한 사항
 - 5. 사회연대경제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6.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전문인력 육성 및 사회연대경제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에 관한 사항
 - 7. 사회연대경제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 8.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
 - 9.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이행 점검 및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 10.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연계·통합에 관한 사항
 - 11. 사회연대경제 정책과 관련한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12. 그 밖에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위원회 구성 및 사무처 설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 중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수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 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 2.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 3.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 야 등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2호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부위원장 1명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다른 부위원장 1명은 제2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④ 제2항제1호 외에 해당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 1.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3명
- 2.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6명
- 3. 제2호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6명
- 4.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3명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제2항제2호의 위원 이 기관·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임기는 대표

- 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주요 활동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⑦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과 위원회를 둔다.
- 8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무처를 두며,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 ⑨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사무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지역사회연대경제위원회) ① 각 시·도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연대경제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지역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16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및 관련민간기관 및 단체, 연구소,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임직원 등의 파견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7조(한국사회연대경제원의 설립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위원회가

심의·조정한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관한 업무를 통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연대경제원(이하 "사회연대경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사회연대경제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사회연대경제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④ 사회연대경제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 써 성립한다.
- ⑤ 사회연대경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사회연대경제조직 양성과 사회연대경제조직 모델 발굴 및 사업화지원
- 2.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학술연구 및 정책개발 사업
- 3.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사회적가치 측정·평가도구 개발
- 4. 사회연대경제조직의 모니터링 및 평가
- 5. 전국·지역·업종·부문 단위 사회연대경제조직 네트워크 구축· 운영 지원
- 6. 사회연대경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7.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 8.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위탁받은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관련한 사업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연대경제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한다.
-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과 협력하여 사회연대경제원의 운영·감독을 총괄한다.
- 8 사회연대경제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⑨ 사회연대경제원은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 및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요청을 받은 기관은 신속히 이에 따라야 한다.
- ① 사회연대경제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사회연대경제원이 아닌 자는 한국사회연대경제원 또는 이와 유 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사회연대경제원의 정관 작성, 이사회·임원, 회계, 관계 기관과의업무협조, 그 밖에 사회연대경제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시·도별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도지사는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도별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이하 "시·도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시·도 지원센터는 민·관 협력 원칙에 기반하여 관설관영, 민간위탁 등 지역 실정에 맞게 다양하게 운영하도록 하며 민간중심의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와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 하며 필요한 경우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시·도 지원센터의 설치, 사업의 범위와 권한, 민간위탁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 제19조(사회연대경제연합조직의 설립 등) ①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사업협력, 상호부조,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전국 ·지역·업종·부문 단위 협의체나 연합체 등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연합조직(이하 "연합조직"이라 한다)을 법인 또는 단체로 설립할 수있다.
 - ② 연합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회원의 협력과 연대를 위한 상부상조사업
 - 2. 생산·가공·구매·판매·보관·운송·상표개발 및 서비스 제공 등의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공동시설의 조성 및 관리·운영 사업
 - 3. 조사 연구 및 홍보 사업
 - 4. 교육·훈련, 상담 및 정보 제공 사업
 - 5.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 7. 그 밖에 연합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③ 연합조직은 회원 및 회원에 속한 구성원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 ④ 연합조직이 제3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 한 같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업무를 연합조직에 위탁할 수 있다.
- ⑥ 제4항에 따른 인가의 요건 및 절차, 공제사업 운영 기준과 그 밖에 연합조직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사회적금융과 사회연대경제 발전기금

- 제20조(사회적금융 제도의 정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도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 1. 사회적가치의 측정 방법 및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신용평가 방법의 개발과 공시제도의 도입
 - 2. 사회적가치를 고려한 금융상품의 개발

- 3.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의 사회 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여신 및 출자 확대와 관련된 제도
- 4. 사회연대경제조직의 특성을 반영한 신용보증제도
- 5.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민간의 여신, 출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 6. 그 밖에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 사업과 연계된 금융제도
- 제21조(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국가의 출연금
 - 2.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 3. 기금의 운용수익금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③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포함하여야 한다.
- 제22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사회적금융 취급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기금 관리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 야 한다.

-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운 용위원회(이하 "기금운용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⑤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 1.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 2.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지원
 - 3.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투자ㆍ융자ㆍ보증 등 금융 지원
 - 4.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사업의 지원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
- 제24조(민간기금의 조성) ① 사회연대경제조직과 사회적금융 취급 기 과은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민간기금을 설립·운용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금에 출연하거나 기부하는 기업·법인·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민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 및 육성

제25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이하 이 조에서 "사회연대경제조직제품"이라 한다)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연 대경제조직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사회연대경제조 직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사회연대경제조직제품의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고 그 구매실적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공고 등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
- 제26조(시설비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조 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

자하거나 국유지 ·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국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회연대경제조 직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양여할 수 있다.
- 제27조(조세 감면 및 재정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 경제조직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 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 지원 대상의 선정 요건 및 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 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를 감면할 수 있다.
 - 1.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아닌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가 사회연대경제조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 2. 사회연대경제조직이 다른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인수·합병하는 경 우

- 3. 사회연대경제조직이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를 인수·합병하는 경우
- ④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 제28조(교육·훈련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 제조직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연대경제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 인식 확산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과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29조(사회연대경제조직 간 협력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협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협의체 구축
 - 2.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정보교류
 - 3.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연구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
 - 4.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지역클러스터 조성 및 유통망 구축
 - 5. 그 밖에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지역 내 다양한 사회연대경제조직과의 협력

- 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사회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원활한 자금조달 등 사회적금융의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둘 이상의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자발적인 조직통합 또는 경영통합을 하려는 경우 이를 촉진하기 위한 금융상 ·행정상·세제상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제30조(국제협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하여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기관과 교류·협력 사업을 할 수 있 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과 해외진출 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사회연대경제조직 또는 관련 단체의 참여를 촉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장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운영

- 제31조(운영의 공개) ① 사회연대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 2. 총회ㆍ이사회의 의사록
 - 3. 회계장부 및 사업결산 보고서
 - 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32조(경영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연대 경제조직은 사회연대경제조직 통합정보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 2. 사업결산 보고서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이하이 조에서 "통합공시"라 한다)할 수 있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합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연대경제조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경영공시를 하는 경우 제 1항에 따른 경영공시를 한 것으로 본다.
 - ⑤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경영공시 또는 통합공시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33조(자료제출 요구) ① 위원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에게 사회연 대경제 현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상 또는 국가 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34조(국회보고)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관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관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35조(벌칙) 제17조제10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 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 제36조(과태료) ① 제17조제11항을 위반하여 사회사회연대경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부과 · 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